##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8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이수진・이연희・김정호

김성환 · 송옥주 · 장철민

민병덕 • 이건태 • 서영교

서미화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천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즉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하천에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狀) 등] 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을 저해하여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홍수피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제는「물환경보전법」에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에 관한 임의적 규정과 이에 대한 개별적・부분적 대응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그

칠 뿐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의 수립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제22조의2 신설).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하천 연속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은 하천 상류와 하류 간 또는 본류와 지류 간 등 유역 전체의 하천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하천 연속성"이라 한다)가 하천횡단구조물[보(洑)등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등으로 인해 단절·훼손되지 않도록 유역별로 시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 연속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청이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연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횡단구조물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 연속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5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2조의2(하천 연속성 관리) ① |
|       |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은      |
|       | 하천 상류와 하류 간 또는 본    |
|       | 류와 지류 간 등 유역 전체의    |
|       | 하천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     |
|       | (이하"하천 연속성"이라 한다)   |
|       | 가 하천횡단구조물[보(洑) 등    |
|       |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구조     |
|       | 물을 말한다] 등으로 인해 단    |
|       | 절·훼손되지 않도록 유역별로     |
|       | 시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업     |
|       | 을 실시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    |
|       | <u>다.</u>           |
|       |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 연속성     |
|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
|       |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
|       | 반영하여야 한다.           |
|       | ③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청이     |
|       |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    |
|       | 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의     |
|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
|       | 있다.                 |
|       |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연속성     |

- 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횡단 구조물의 설치·운영 실태 등 을 조사·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가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 연속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